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시기 운영 위탁 근거 신설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25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감시기 운영 위탁 근거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20.

다.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감시기 운영 위탁 근거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공항·항만 감시기의 설치·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 시설운영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여 실제 감시기 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 ----- -----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같은 조 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현행	개정안
<신설>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 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신설>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 사
<신설>	4.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
<신설>	5.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 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
<신설>	6. 그 밖에 공항·항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 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 설>	③ -----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 시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 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 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④ ----- ----- ----- -----따른----- -----.

현행	개정안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u>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u>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 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 ----- <u>자</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9조¹⁾는 원안위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은 항공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허술한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재발을 방지하고 생활방사선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1년에 제정되었음.
- 이에 원안위는 동 법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2)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3)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9개) 및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4)에 따른 무역항(31개)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공항·항만 시설의 관리·운영 구조가 복잡하여 실제 감시기 운영이 법정 수탁자가 아닌 별도의 현장 운영주체에 의해 재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률상 수탁자와 실제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원안위의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항·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 3) 「공항시설법」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4)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무역항

- 이에 개정안은 감시기의 설치·운영 대상을 실제 운영기관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원안위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감시기 운영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 직구 증가 등으로 공항·항만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운영주체와 직접 위탁관계를 설정하여 제도 운영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고 원안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 현재 위탁 기관 등에 대한 경비 지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동 법에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면 운영비 지원의 법적 안정성과 예산집행상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원안위도 개정안과 같이 감시기의 협조 및 위탁 대상을 실제 운영기관까지 확대하고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감시기 운영 위탁기관 및 재위탁기관 현황

구분	화물터미널 및 부두명(69개)	위탁기관 (18개)	재위탁기관(40개)	적용 명칭
경인	경인항	한국 수자원공사	에스엠상선 경인터미널(주)	부 두 운 영 회 사
	경인항 모래부두		(주)대우로지스틱스	부 두 운 영 회 사
여수/ 광양	컨테이너부두3단계1차 (GWCT)	여수광양 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	항 만 관 리 법 인
	하포일반부두			
	컨테이너부두2단계2차 (KIT)		여수국제 항만(주)	부 두 운 영 회 사
	여천일반부두			
군산/ 장항	7부두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주)군산항부두관리공사	항 만 관 리 법 인
	신항만부두			
	3부두(후문)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부 두 운 영 회 사
	5부두(후문)			
	군산컨테이너터미널		-	항만시설운영자
	국제여객부두 (정문)			
	1부두 (후문)			
	3부두 (정문)			
	5부두 (정문)			
	장항항 (정문)			
대산	대산항 TOC부두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대산항만운영(주)	부 두 운 영 회 사
동해	동해항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	항만시설운영자
마산	5부두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	항만시설운영자
진해	2부두		-	
삼천포	신항부두		-	
목포	대불부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대불부두(주)	부 두 운 영 회 사
	목포신항		목포신항만운영(주)	부 두 운 영 회 사
부산	감만부두	부산 항만공사	신선대감만터미널(주)	부 두 운 영 회 사
	신선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주)	부 두 운 영 회 사
	신감만부두(허치슨)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부 두 운 영 회 사
	신항1부두		부산신항만(주)	부 두 운 영 회 사
	신항2부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 두 운 영 회 사
	신항3부두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 신항만(주)	부 두 운 영 회 사
	신항4부두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부 두 운 영 회 사
	신항5부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 두 운 영 회 사
	신항6부두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부 두 운 영 회 사
	신항7부두			

구분	화물터미널 및 부두명(69개)	위탁기관 (18개)	재위탁기관(40개)	적용 명칭
	신항 다목적부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	부 두 운 영 회 사
	YK부두 (감천5부두)		부산항보안공사	항 만 관 리 법 인
	감천중앙부두			
	국제부두			
울산	울산본항 1/2부두	울산 항만공사	울산항만관리	항 만 관 리 법 인
	5부두			
	7부두			
	일반부두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 (주)동방_울산컨테이너터미널	부 두 운 영 회 사 부 두 운 영 회 사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			
	울산신항			
인천	인천내항	인천 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항 만 관 리 법 인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E1컨테이너터미널	부 두 운 영 회 사 부 두 운 영 회 사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남항E1CT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부 두 운 영 회 사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	부 두 운 영 회 사
	북항4부두		인천북항부두운영(주)	부 두 운 영 회 사
	북항1부두		(주)동방 인천지사	부 두 운 영 회 사
			(주)동방 평택지사	부 두 운 영 회 사
평택/ 당진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피디피에스(주)	항 만 관 리 법 인
	평택당진항 서부두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부 두 운 영 회 사
	평택컨테이너터미널		평택항만주식회사	부 두 운 영 회 사
	평택항만 (동부두 10번-12번)		당진항만(주)	부 두 운 영 회 사
	당진항 고대부두 7번		대아항운 주식회사	부 두 운 영 회 사
	평택항국제여객부두		포항영일신항만(주)	부 두 운 영 회 사
			-	항만시설운영자
포항	포항국제컨테이너터미널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포항신항			
인천 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국제 공항공사	국제우편물류센터	보안검색 실시자
	인천세관특송물류센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보안검색 실시자
	DHL		DHL KOREA	보안검색 실시자
	한국공항		한국공항(주)	항공기취급업자
	UPS		UPS	항공기취급업자
	(주)아시아나에어포트	(주)아시아나 에어포트	-	항공기취급업자
	대한항공	대한항공	현대엔지니어링	항공기취급업자
	아시아나항공	에어제타(주)	(주)프로에스콤	보안검색 실시자
김포 공항	대한항공	대한항공	(주)유니에스시큐리티	보안검색 실시자
	아시아나항공	에어제타(주)	(주)프로에스콤	보안검색 실시자
김해 공항	대한항공	대한항공	더 케이텍(주)	보안검색 실시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